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이노테크
○ 물 품 명 : 무정전전원장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508,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 이 노 테 크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이노테크
○ 물 품 명 : 무정전전원장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508,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 이 노 테 크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넷앤드
○ 물 품 명 : HIWARE PSM Manager 1식, HIWARE PSM Node License 17EA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992,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 넷 앤 드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넷앤드
○ 물 품 명 : HIWARE PSM Manager 1식, HIWARE PSM Node License 17EA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992,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 넷 앤 드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한국인프라
○ 물 품 명 : 자산관리 SW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316,000원(VAT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한 국 인 프 라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한국인프라
○ 물 품 명 : 자산관리 SW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316,000원(VAT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한 국 인 프 라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주)아이하트
○ 물 품 명 :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5,26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주) 아 이 하 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주)아이하트
○ 물 품 명 :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5,26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주) 아 이 하 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주)울타리정보통신
○ 물 품 명 : 앳메신저(AtMessenger v7.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62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주)울타리정보통신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주)울타리정보통신
○ 물 품 명 : 앳메신저(AtMessenger v7.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62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주)울타리정보통신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피데스
○ 물 품 명 : 새올 조직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945,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피데스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피데스
○ 물 품 명 : 새올 조직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945,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피데스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지란지교소프트
○ 물 품 명 : PCFILTER v3.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253,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지란지교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지란지교소프트
○ 물 품 명 : PCFILTER v3.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8,253,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지란지교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주)세이퍼존
○ 물 품 명 : 보안USB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30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주)세 이 퍼 존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주)세이퍼존
○ 물 품 명 : 보안USB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7,300,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주)세 이 퍼 존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이지서티
○ 물 품 명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시스템(UBI SAFER-PSM)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3,05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 이 지 서 티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 주 자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공 급 사 : ㈜이지서티
○ 물 품 명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시스템(UBI SAFER-PSM)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13,05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자" 하 남 시 청 (인)
"공급사" ㈜ 이 지 서 티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이너비스
○ 물 품 명 : 로그관리시스템(Innerbus LogCenter)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6,177,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30일

발주기관명 하 남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 이 너 비 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발주기관 : 경기도 하남시(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이너비스
○ 물 품 명 : 로그관리시스템(Innerbus LogCenter)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하남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6,177,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30일

발주기관명 하 남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 이 너 비 스 (인)